

	예지관(학생생활관)운영규정	규정번호	3-7-10
		제정일자	2016.05.01.
		개정일자	2026.09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예지관(학생생활관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예지관(학생생활관) (이하 “예지관”이라 한다)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) ① 예지관의 기본 운영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예지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삭제 <2026.09.01.>

제2조의2(기숙사비심의위원회) 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기숙사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6.09.01.]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예지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며, 위원은 전임교원 중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, 간사는 예지관 직원 중에 관장이 지정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6.09.01.>

④ 위촉위원의 해촉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26.09.01.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예지관 운영관련규정 및 예지관 수칙의 제·개정
2. 예지관 예산 및 결산
3. 예지관 입사자의 선정기준
4. 외부인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시설 사용료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입사자격) 예지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재학하는 학생과 교직원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외의 자에게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7조(입사신청 및 선발) 관장은 당해 학년도 입사자격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며, 예지관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1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휴학 중인 자
3. 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동생활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
 - 가. 감염성질환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나. 공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자
4. 직전 2개 학기(1년) 동안 기숙사비 미납으로 강제퇴사 조치된 전력이 있는 자 <신설 2026.09.01.>
5. 기타 관장이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9조(입사기간 및 퇴실) ① 입사는 학기·방학 단위로 할 수 있으나 수용 가능한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.

② 입사자는 입사기간 만료 시 퇴실하여야 한다.

③ 입사자는 퇴실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공용물품과 사용료 등 납부사항 등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예지관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11조(예산과 결산) ① 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세입·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
② 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
제12조(재정부담) ① 시설비,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에 예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입사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생활편의용품(비품)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숙사비) ① 입사자는 매학기 개시 전 별도 공고되는 사항에 따라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시입사일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와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을 따른다.

② 기숙사비 및 납부 방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26.09.01.>

제14조(외부인 이용) ① 외부인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.

② 관장은 예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의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외부인의 이용 가능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게스트 룸
2. 방학 중 공실
3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④ 외부인의 이용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이용 목적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⑤ 외부인의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⑥ 외부인은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.

⑦ 외부인은 예지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이용 제한 또는 즉시 퇴실 조치할 수 있다.

⑧ 외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⑨ 외부인의 안전사고 및 귀중품 분실에 대해서 예지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⑩ 외부인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6.09.01.]

제15조(예지관 수칙의 준수) ① 모든 입사자는 예지관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예지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입사자가 지켜야 할 세부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은 예지관 수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16조(통보의무) 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예지관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
2. 화재, 풍수해, 도난, 긴급환자 기타 이변이 있을 때
3. 예지관내 또는 부근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
4.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7조(금지사항)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사용권의 양도, 전대,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
2. 예지관 시설 내에서 자해 및 폭력(신체적, 언어적, 성적)을 사용하는 행위
3. 예지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,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4. 예지관 시설 내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행위
5. 애완동물의 사육
6. 영리목적의 상행위
7. 허가되지 않은 각종 전기·전자제품(전열기 등)의 사용

제18조(제재) 제17조의 금지사항 및 예지관 수칙을 위반한 자, 기숙사비 미납자에 대하여 관장은 경고 또는 퇴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